

##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 
번호

74

제안년월일 : 2003. 11. 12  
제 안 자 : 최 광 렐의원외 6인

### 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15회 정례회 및 제116회 임시회에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### 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하는 2004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유도하고 정확한 재정수요 및 수입 예측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성위원정수 : 7명
- 나. 위원선임 :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다.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 : 총무위원회 3명, 사회도시위원회 4명
- 라. 활동기간 : 제115회 정례회(2004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) 및  
제116회 임시회(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)

### 4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
- 나.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